

제359회 임시회
2017. 10. 17.(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3. 제안이유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전가정기본법」 제21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 위탁기간 종료('17.12.31.)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8.01.01.~'20.12.31.)
- 선정기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있고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 ※ (현)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15.1.1~'17.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예 산 액 : 213,900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 가능
- 주요사무
 - 장애가족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 시·군·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Control-tower 로 시·군센터 업무지원
 -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사 파견 등
 - 장애의 이해·인식개선사업 및 장애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사업, 장애가족실태 및 욕구조사, 정보제공 등
 - 그 밖에 장애인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7조·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 할 사무로 2015년부터 도내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왔음.
-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도움 제공자가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사례관리, 역량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역할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적정함.

다. 종합의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들의 자녀를 돕기 위해 가족들에게 능력을 주고, 가족에게 힘을 실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법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할 것임.
- 또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연속성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등의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명품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참고 ①

타 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시도센터 시도비 지원	시군구 센터 지원 현황	비 고
서울	시센터 300 지원	4개구(서초구, 노원구, 동작구, 은평구)	서초구 167, 노원구 90, 동작구 53, 은평구 158
부산	시센터 154 지원		구센터 없음
대구	시센터 195 지원		구센터 없음
인천	시센터 50 지원		구센터 없음
광주	시센터 113 지원	4개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서구 64, 남구 64, 북구 64, 광산구 64
대전	-	2개구(동구, 중구)	동구 186, 중구 226
울산	시센터 107 지원		구센터 없음
세종	시센터 150 지원		구센터 없음
경기	도센터(수원) 300 지원 도센터(의정부) 200 지원	5개시(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광명시 180, 구리시 100, 시흥시 200, 안산시 100, 의왕시 179
강원	도센터 없음	2개시(원주시, 강릉시)	원주시 90, 강릉시 100
충북	도센터 214 지원	5개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음성군)	청주시 200, 충주시 120, 제천시 107, 옥천군 67, 음성군 86
충남	도센터 200 지원	11개 시·군 (천안,당진,아산,서산,보령, 계룡,태안,예산,홍성,금산,서천)	1개 시군당 150 (천안,당진,아산,서산,보령, 계룡,태안,예산,홍성,금산,서천)
전북	도센터 150 지원	3개시(전주,군산,익산)	1개 시당 50 (전주,군산,익산)
전남	도센터 200 지원	4개시(목포,여수,순천,광양)	4개 시당 60 (목포,여수,순천,광양)
경북	도센터 150 지원	10개 시·군(포항시,경산시, 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 상주시,안동시,울진군,칠곡군)	10개 시·군 (포항145, 경산85, 경주125, 구미104, 김천85, 문경85, 상주85, 안동85, 울진85, 칠곡114)
경남	도센터 270 지원	14개군(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14개 시·군 (양산시 79, 의령군 75, 창원시 280, 창녕군 85, 통영시 30, 하동군 75, 함안군 75, 함양군 75, 합천군 75, 남해군 85, 거창군 75, 밀양시 170, 사천시 78, 산청군 75)
제주	도센터 없음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	2개시(제주시 160, 서귀포시 181)

참고 ②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

□ 연도별 센터 도비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55,000	110,000	110,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75,000	187,000	213,900
도 센터	55,000 (50%)	110,000 (50%)	110,000 (50%)	125,000 (50%)	125,000 (50%)	100,000 (40%)	100,000 (40%)	175,000 (100%)	187,000 (100%)	213,900 (100%)
청주시 센터										
충주시 센터										
제천시 센터				22,000 (20%)	22,000 (20%)	22,000 (20%)	22,000 (20%)			
옥천군 센터										
음성군 센터										

□ '17년 센터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합계	887,900	213,900	580,000	94,000	
도 센터	220,900	213,900		7,000	
청주시 센터	225,000		200,000	25,000	
충주시 센터	155,000		120,000	35,000	
제천시 센터	130,000		107,000	23,000	
옥천군 센터	69,000		67,000	2,000	
음성군 센터	88,000		86,000	2,000	

□ '17년 센터 근무현황

(단위 : 명)

구분	근무인원 현황					비고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합계	20	6	3	4	7	
도 센터	5	1	1	1	2	장애인부모회
청주시 센터	5	1	1	3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 센터	3	1	1		1	“
제천시 센터	3	1			2	“
옥천군 센터	2	1			1	“
음성군 센터	2	1			1	“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2015.3.27.)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